

#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2. 1. 21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2. 1. 28

다. 의안번호 : 제 4 호

라. 상정일자 : 2002. 1. 29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세제지원(감면) 범위를 “지정문화재”에서 그 범위를 “개인소유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등을 감면하여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유지·보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며,
- 전·월세금의 급격한 상승(인상)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상승억제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보완키 위함.

### 나. 주요골자

- 거창군세 감면조례의 제정·시행 목적의 내용을 보완[안 제1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재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보호물 등]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개인소유의 건조물,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중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도 감면키 위해 그 범위를 확대[안 제9조]
-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로 확대[안 제11조]

- 기타 관련법의 개정등 사유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  
[안 제4조, 제12조, 제25조, 제3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조세 감면 조례의 제정과 시행 목적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개정에 따라 전염병 명칭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문화재에 대한 군세 감면에 있어서도 당초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개인 소유의 건조물이나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중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도 감면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군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조세 감면조례의 제정과 시행 목적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개정에 따라 전염병 명칭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문화재에 대한 군세 감면에 있어서도 문화재 관리 강화를 위해
- 현재 국보, 보물, 사적, 보호물 등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개인소유의 건조물이나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중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도 감면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 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군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 결함.

##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